

도민이 중심  
신뢰받는 의회

2024. 1. 24.(수)  
제414회 임시회  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#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그 수행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 생산품, 농수축산물 등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,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목적규정에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(안 제1조)
- 정의규정 중 인용법령 및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(안 제2조제2호·제3호)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사업 신설 및 조문 정비(안 제3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### 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인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및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함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 농수축산 제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충청북도 내 생산품, 농수축산물 등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는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규정에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(안 제1조)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→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- 정의규정 중 인용법령 및 용어를 수정(안 제2조제2호·제3호)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사업 신설 및 조문 정비(안 제3조)

(신설) 충청북도 내 생산품, 농수축산물 등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

### 다. 종합의견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근거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함
- 다만,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 농수축산 제품 판매 및 유통 조직 신설계획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